

코로나19 신고 및 자율보호 대상자

우리 대학의 코로나19 발생 대상자 관리는 감염관리단이 총괄하며,
안전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
□ 신고 대상자

신고대상자	정의	관리방법
확진환자	-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, 즉 <u>검사결과 확진환자로 판정된 자</u>	입원치료 [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] O 검체채취(선별진료소) 격리조치
의사환자	-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(37.5 °C 이상의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)이 나타난 자	격리조치
접촉자(감염병의심자)	- 감염병 환자, 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자	격리조치
조사대상 유증상자	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	검체채취(선별진료소) 격리조치 [보건소 자가격리통지서] O

□ 자율보호 대상자

신고대상자	정의	관리방법
자율보호 대상자	- 코로나19 신고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 - 자율보호 대상자는 ①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 ②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유증상자 또는 무증상자 ③ 보호자 및 동거인이 선별진료를 받았거나,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아직 확인되기 전 학생 및 교직원 - 예방팀 판단에 따라 14일간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(자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'음성' 시 해제)	자가 모니터링 증상 발현시 관할보건소 및 콜센터 연락 대학 예방관리팀 연락

* WHO 홈페이지 local transmission 참조(<https://www.who.int/emergencies/diseases/novel-coronavirus-2019/situation-reports>)